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305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정부 정책에 따른 폐업지원금 비과세(임미애의원안)	3

I. 개요

1.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30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미애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9. 26.

(3) 회 부 일 : 2025. 9.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에서는 정책상 사업의 감축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금등을 지급하고 해당 농어민등에게 생계수단의 변경을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금등에 대한 비과세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과세 대상으로 분류됨으로써 정책에 참여한 국민들이 참여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 감축을 명시한 법령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하여 정책 참여에 대한 대가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호아목 및 제12조제5호차목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현 행	개정안
☐ 비과세 소득(제12조제2호) <u><신 설></u> <u><신 설></u>	☐ 특정 업종에 대한 폐업지원금 비과세 규정 신설 ○ <u>비과세 사업소득 신설(제12조제2호 아목 신설)</u> - <u>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 감축을 명시한 법령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u> ○ <u>비과세 기타소득 신설(제12조제5호 차목 신설)</u> - <u>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 감축을 명시한 법령에 따라 어업권, 양식업권 등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이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u> ○ 시행일: <u>2026년 1월 1일</u> ○ 적용례: <u>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은 소득분부터 적용</u>

* 임미애의원안 2025. 9. 26. 발의 (의안번호 13305)

☐ 개정안은 특정 업종의 폐업·감축을 명한 법령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거나, 어업권·양식업권 등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해 사업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 정부는 정책상 특정 사업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령¹⁾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게 생계수단의 변경을 유도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르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는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여야 함에 따라, 정부는 지원금의 형식으로 폐업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고 있음.

위 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별도의 세제 혜택 없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납세자들이 정책 순응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 감축을 명시한 법령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참여에 대한 대가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귀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러한 폐업·감축 지원금을 비과세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들의 신속한 참여 및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구조개선 정책 집행의 속도 및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 정부가 특정 업종의 구조조정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면서도 동시에 그에 따른 폐업·퇴출 보상금에 과세를 유지할 경우, 세후 실수령액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당사자의 참여 유인이 저하되고 구조조정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사실상 정부가 개인의 직업선택 및 수행의 자유를 제약하여

1)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공익사업법」 등

“시장에서의 퇴출”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보상금에 대해 세제상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세금이라는 추가적 장벽을 제거할 경우 해당 업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둘째, 세후 실수령액이 명확해짐에 따라 보상수준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강화되고, 보상금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수 있음. 또한 납세비용 및 불복에 대한 대응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징세 및 납세 관련 비용을 저감할 수 있음.

셋째, 폐업자, 특히 고령층 및 영세사업자들의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보상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실수령액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유동성 충격을 완화하고, 부채 정리·전업·재취업 등 폐업 이후의 연착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은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보상하는 것으로서²⁾, 공익목적 여부, 지급 주체 등과 무관하게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음.³⁾

둘째, 폐업 등에 대한 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할 경우 조세지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최근 전체 조세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도의 경우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 제80조⁴⁾

2)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상 해당 사업자의 직전 평균 수익액의 3~5년치로 산정함.

3) 기획재정부의 의견임.

4)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에 따른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세지출 규모의 확대 측면, 예산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국세감면액 규모]

(단위: 억원, %)

연 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국세감면액 (A)	570,248	635,484	697,664	705,171	764,719	805,277
국세수입총액 (B)	3,639,730	4,229,237	3,703,803	3,656,829	4,003,076	4,195,673
국세감면율 [A/(A+B)]	13.5	13.0	15.8	16.1	16.0	16.1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14.3	14.6	14.3	14.6	15.5	16.5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5) 개정안이 예시로 들고 있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을 살펴보면, ①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813척의 연·근해어업에 대한 감척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해 같은 기간 동안 5,960억원의 지원금이 교부되었음. ②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도 예산에 따르면 개사육 농장주의 폐업·전업 지원을 위해 폐업 이행촉진 지원금 등 국비 485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비까지 고려하면 개사육농장주의 생계 안정 및 원활한 업종 전환 유도를 위해 총 1,095억원의 예산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